

고용창출장려금은

-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
- 국내복귀기업으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
- 신중년 적합직무에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
-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지원

고용안정장려금은

-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근로자 또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킨 사업주에게 지원

고용유지지원금은

-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무급 휴업·휴직을 한 근로자를 지원

청년·장년 고용장려금은

- 청년층에게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
-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

고용환경개선장려금은

-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
- 고령자 고용에 따른 환경 개선을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을 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구직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지원



I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1.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체계
2. 고용장려금 찾기



1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체계

고용창출장려금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 정규직 전환 지원 •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지원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청년 고용장려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고령자 고용장려금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자금 융자 •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융자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2 고용장려금 찾기

1 / 근로자를 새로 고용할 계획이 있다.

① 연장근로를 단축하고자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18
② 국내복귀기업에 해당된다.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24
③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이상 실업자를 고용하고자 한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26
④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이 특히 어려운 사람을 고용하려고 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28
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62
⑥ 청년을 고용하여 장기 근속하기를 바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60
⑦ 정년을 정한 적이 없고 60세 이상 근로자가 많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	64
⑧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76

2 / 소속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기를 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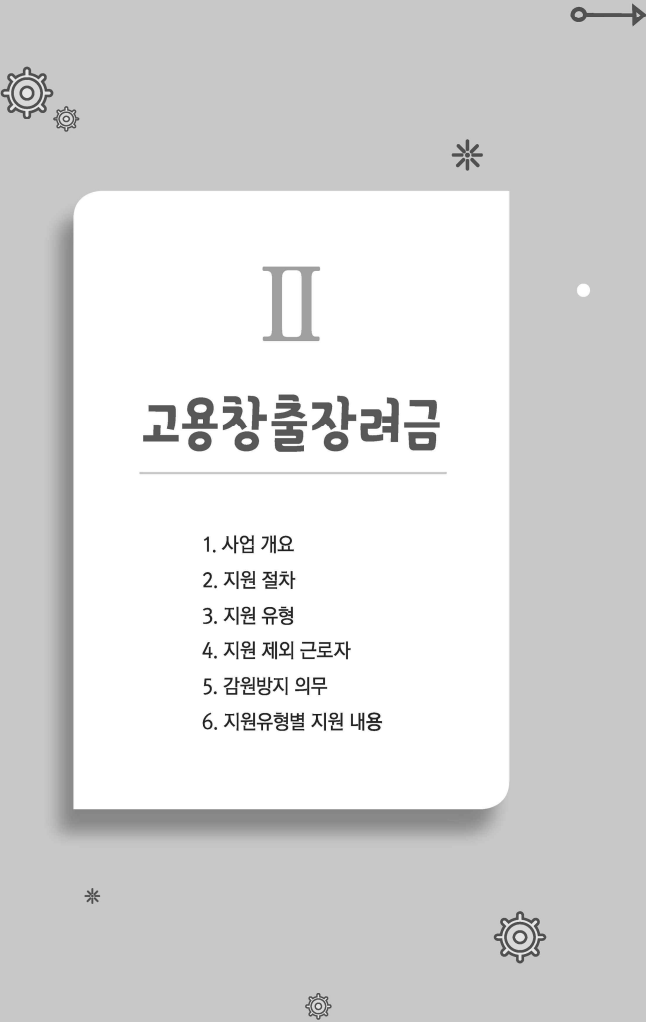
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45
②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의 대체 인력을 고용했다.		
③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근로자 또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있다.	정규직 전환 지원	38
④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근로자가 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40
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려는 근로자가 있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43
⑥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연장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65

3 / 기업 사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① 기업 사정이 어려우나 감원 없이 휴업, 휴직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48
② 기업 사정이 어려워 휴업·휴직 수당을 못주거나 50% 미만으로 줄 예정이다.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56

4 /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환경개선이 필요하다.

①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며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68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70
③ 고령자를 위한 고용환경개선이 필요하다.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자금 융자 지원	71
④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설·설비투자가 필요하다.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융자 지원	72
⑤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한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다.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74



II

고용창출장려금

1. 사업 개요
2. 지원 절차
3. 지원 유형
4. 지원 제외 근로자
5. 감원방지 의무
6.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1 사업개요

- ☐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 또는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중년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
- ☐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단, 주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참여신청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2 지원 절차



① 사업참여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제출
- 구비서류
 - (공통)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
 - (해당기업만) 심사우대입증서류*, 중견기업확인서, 국내복귀기업확인서.
단,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용자 지원 신청시에는 투자견적서·계약서, 설비투자 완료계획서, 부동산 구매·임대계약서, 용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 등 제출 서류가 필요
 - *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근무혁신 우수기업, 강소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관 인증기업 등),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지청장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 라인' 또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한 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등

② 대상선정 | 매월

- 연중 수시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직전 달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심사하고, 승인 여부는 5일 이내에 신청사업주에게 통지
- ※ 회차별 사업계획서 공모는 당해 연도의 예산 소진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3

지원 유형

유형		지원 내용
사업 참여 신청 필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공모형)	·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 증가한 근로자 1인당 > ▶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최대 월 40만원 < 기업당 > ▶ (설비투자비 용자) 10억원 한도로 증가한 근로자 1인당 1억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 증가한 근로자 1인당 >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사업 참여 신청 불필요	고용촉진 장려금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섬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요건심사형)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라 주 최대 5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 증가한 근로자 1인당 > ▶ (인건비)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월 40~100만원*, 1~2년 지원 *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 (임금감소액 보전) 월 최대 40만원, 1~2년 지원 * 사업주 보전임금의 80% 한도 *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노선버스업종의 경우 20명까지 지원)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0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의 경우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 * 다만,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지원

❖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사람

-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 중증장애인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 ②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을 이수한 사람 중 아래 유형 해당자
 -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 지원자 ㉦ 결혼이민자 ㉧ 위기청소년 ㉨ 여성가장 ㉩ 건설일용직 ㉪ 장애인
 - ㉫ 니트(NEET)족
- 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공단이 위탁한 다음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형훈련)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④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⑤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를 이수한 사람
- ⑥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을 이수한 사람
- ⑦ 자활근로에 2개월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

② 비상근축타근로자

- * 다만,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축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지원

③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지원

④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1년 이내) 사업주이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

- * 다만, 이직 당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우선 재고용된 경우,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축락직 근로자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경우는 지원

- ⑥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 다만, 주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는 지원
- ⑦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⑧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02.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 * 다만,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과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지원



❖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사람

-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 ②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을 이수한 사람 중 아래 유형 해당자
 -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 위기청소년 ㉦ 여성가장 ㉧ 건설일용직 ㉨ 장애인
 - ㉩ 니트(NETT)족
- 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공단이 위탁한 다음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형훈련)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④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⑤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를 이수한 사람
- ⑥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을 이수한 사람
- ⑦ 자활근로에 2개월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
- ⑧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② 비상근촉탁근로자

③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지원

④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1년 이내) 사업주이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

- * 다만, 이직 당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우선 재고용된 경우,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지원

⑥ 대규모기업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29세 이하 실업자 중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를 고용한 경우

⑦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을 새로 고용한 경우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제한, 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다만,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은 감원방지 의무 규정 적용하지 않음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주 근로시간 단축*,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일자리 순환제 도입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업 및 조기단축 기업의 지원을 위해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신설('18년 7월)

○ 지원요건

① 아래 가~다의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
가. 교대제 도입·확대

-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나.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제)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 (주 근로시간 단축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라 주 최대 5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다. 일자리 순환제

-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②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증가 근로자수 = (제도 도입 후 매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①) - (제도 도입 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②)

① 제도 도입 후 월말 피보험자 수는 제도 도입일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지원제외 근로자(15P 참고)를 제외하고 산정

② 주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기업의 사정에 따라 제도 도입일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와 비교 가능

③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주 근로시간을 단축한 조기단축기업의 경우

-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기 위한 취업규칙·단체 협약 등을 제·개정한 후 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 조기단축기업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대표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 사업장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지원금 지급 단위기간인 3개월간 기업의 주당 근로시간이 개정 법정근로시간 한도 이하로 유지되어야 함

○ 지원내용

::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증가근로자 인건비*), 연장근로시간이 감소된 기존 근로자의 임금감소액의 일부(임금보전비**)를 지원

* 증가 근로자수 1명당 월 40~100만원 1~2년간 지원

** 1명당 월 최대 40만원까지 1~2년간 지원

::기타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용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설비투자비의 일부(설비투자비 용자*) 지원

* 총 투자비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원(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이율은 우선지원대상기업 1%, 대규모기업 2%)

Ⅱ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요건심사 방식, '18년 신설)

※ 주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기준(상시근로자 수)으로 지원

① 법정근로시간 단축기업

상시근로자 수	증가근로자 인건비		임금보전	
	1명당, 1개월, 최대금액, 기간			
500인 초과	60만원, 1년		-	
300인~500인	제조업	80만원, 2년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40만원, 2년
	특례제외업종 및 기타업종	60만원, 1년	기타업종	40만원, 1년
300인 미만	제조업	80만원, 2년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40만원, 2년
	특례제외업종 및 기타업종	80만원, 1년	기타업종	40만원, 1년

* 지원금액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 (증가근로자 인건비)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 당 1명
(임금보전) 증가근로자 지원인원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

가. 500인 초과 기업

- 증가근로자 인건비 : 월 60만원, 1년 지원
- 임금보전 : 지원 대상 아님

나. 300인~500인 기업

- 증가근로자 인건비 : 제조업 월 80만원 2년, 그 외 60만원 1년 지원
- 임금보전 :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40만원 2년, 그 외 40만원 1년 지원

다. 300인 미만 기업

- 증가근로자 인건비 : 제조업은 80만원 2년, 그 외 80만원 1년 지원
- 임금보전 :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40만원 2년, 그 외 40만원 1년 지원

②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단축한 조기단축 기업

※ 법정시행일까지 6개월 미만인 기업은 「① 법정근로시간 단축기업」 기준 적용

상시근로자 수		증가근로자 인건비	임금보전
		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기간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법정시행일까지 60만원/ 이후 40만원, 2년	40만원,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 최소 2년
300인 미만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이후 80만원, 최소 2년	40만원,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 최소 2년
	기타업종	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이후 80만원, 최소 1년	40만원,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 최소 1년

* 지원금액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 (증가근로자 인건비)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 당 1명, (임금보전) 증가근로자 지원인원 1인당 근로 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

가.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 증가근로자 인건비 :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월 60만원을 지원,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 이후는 월 40만원, 총 2년간 지원
- 임금보전 : 월 최대 40만원, 최소 2년간 지원

나. 300인 미만 기업

- 증가근로자 : 법정시행일이 속한달까지 월 100만원을 지원, 법정시행일이 속한달 이후는 월 80만원 지원하되,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최소 2년, 기타업종은 최소 1년 지원
- 임금보전 : 법정시행일이 속한달까지 월 최대 40만원지원하되,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최소 2년, 기타업종은 최소 1년 지원

③ 노선버스에 대한 지원 특례

※ 버스업종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대 지원

상시근로자 수		법정근로시간단축	52시간 조기단축
		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기간	
500인 초과	증가근로자 인건비	60만원, 1년	법정시행일까지 60만원/이후 40만원,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 최소 2년
	임금보전	40만원, 2년	40만원,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 최소 2년
300인~500인	증가근로자 인건비	60만원, 1년	법정시행일까지 60만원/이후 40만원,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 최소 2년
	임금보전	40만원, 2년	40만원,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 최소 2년
300인 미만	증가근로자 인건비	80만원, 1년	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이후 80만원,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 최소 2년
	임금보전	40만원, 2년	40만원,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 최소 2년

* 지원금액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 (증가근로자 인건비)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 당 1명, (임금보전) 증가근로자 지원인원 1인당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기존 재직자 20명까지 지원

② 교대제 개편·실 근로시간 단축·일자리순환제(공모방식)

※ 기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공모방식)은 고용보험법 기준(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으로 지원

구 분		증가근로자 인건비(1명)	임금보전(1명)
		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비 제 조 업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1년	40만원, 1년
	중견기업	40만원, 1년	40만원, 1년
	대규모기업	40만원, 1년	-
제 조 업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2년	40만원, 2년
	중견기업	40만원, 2년	40만원, 1년
	대규모기업	40만원, 1년	-

* 지원금액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 (증가근로자 인건비) 한도 없음 (임금보전) 증가근로자 지원인원 1인당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

○ 지원제외 사업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주 또는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 *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 한함
- ※ 기타 지원제외 사업주 및 지원제외 근로자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및 지침」에서 정한 경우

○ 사업추진체계

①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요건심사 방식)



② 교대제 개편·실 근로시간 단축·일자리순환제(공모방식)



○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용자 지원

☞ VI.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 4.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용자 지원 참조(72P)



2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요건
 - 국내복귀기업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3년 이내인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월평균 피보험자수①) - (사업 시행 전 월평균 피보험자수②)
 - ① 사업주가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 ②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유 형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180만원	720만원
중견기업	90만원	3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100명 이내로 지원

○ 지급 기간 및 주기

- 2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 월할 계산하지 않음



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로 고용한 경우 지원

-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 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요건

- ❶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❷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❸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❹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 다만,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15P 참고)

☞ VII. 참고사항 / 04. 신중년 적합직무 참조(85P)

○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인당 월 40~80만원 지원

유 형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240만원	960만원
중견기업	120만원	48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한도)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년도 말일 피보험자수의 30%(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지급 기간 및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월할 계산하지 않음



4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

○ 지원요건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구직등록이 유효한 실업자를 고용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p29 참고)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섬지역 거주자

- 구직등록은 고용센터(work-net)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관에 하여야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이수한 사람의 범위
1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 ‘I 유형’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II 유형(중·장년층)’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II 유형’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단, 2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40세 이상~50세 미만의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4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및 「 내일이룸학교」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를 마친 사람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이수한 사람의 범위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기술교육원 직업훈련」 (법무부)	•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정규훈련, 맞춤훈련)」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 단,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 근로’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
10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국방부, 국가보훈처)	•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직업교육훈련(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초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 •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이수한 사람의 범위
12	「일반고 특화훈련」 (고용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으로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을 마친 사람
13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4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1년 전부터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지정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수사실이 유효

②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 － 예외적으로 ①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하면 지원대상이 됨

구 분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여성실업자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지원)대상자
섬 지역 거주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5조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취업취약계층

○ 지원 수준 및 한도

-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유 형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3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일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를 제외한 인원수

 <참고>

- 지원인원 = 기준 피보험자수 - 제외 피보험자 수

	기준 피보험자수	제외 피보험자 수
원 칙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30%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의 고용일 직전 3년간 고 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의 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30%가 30명 이상	30명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1~10명	3명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의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함

○ 지급 기간 및 주기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

※ 월할 계산하지 않음

-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III

고용안정장려금

1. 사업 개요
2. 지원 절차
3. 지원 유형
4. 지원 제외 근로자
5.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1 사업개요

- ☐ 소정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
- ☐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 워라벨일자리 장려금의 경우 사전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로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면 지원

2 지원 절차



(1) 사업참여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제출
- 구비서류
 - (공통)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서류
 - (해당기업만) 심사우대 입증서류, 중견기업확인서,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 건적서 및 계약서 증빙서류
 - *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근무혁신 우수기업, 강소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관 인증기업 등),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지청장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 라인' 또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한 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등

(2) 대상선정 | 매월

- 연중 수시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직전 달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심사하고, 승인 여부는 5일 이내에 신청사업주에게 통지
- ※ 회차별 사업계획서 공모는 당해 연도의 예산 소진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3 지원 유형

유형	지원 내용									
사업 참여 신청 필요	정규직 전환 지원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전환된 근로자 1인당> ▶ (임금증가액 보전금) 월 최대 60만원(임금상승분의 80% 한도)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도록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 (간접노무비) 주당 활용횟수에 따라 1주당 5~10만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재택·원격근무 활용 계획이 있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인프라구축 기업당> ▶ (인프라구축비) 시스템 구축비 최대 2천만원 지원								
사업 참여 신청 불요	위라벨 일자리 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조정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단축 근로자 1인당>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4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2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육아휴직등 부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 (대체인력지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해당 근로자 1인당> ▶ (대체인력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육아휴직등 부여 간접노무비) <table border="1"><thead><tr><th>유 형</th><th>육아기 근로시간단축</th><th>육아휴직</th></tr></thead><tbody><tr><td>우선지원대상기업</td><td>월 30만원</td><td>월 30만원</td></tr><tr><td>대규모기업</td><td>월 10만원</td><td>미지급</td></tr></tbody></table>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10만원 추가 지원(1호 인센티브)	유 형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월 10만원
유 형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월 10만원	미지급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01. 정규직전환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의 경우

- ①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자
 - *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사업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의 대체인력은 외국인도 가능
- ④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0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 ①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자
 - *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규직전환 지원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주

- 지원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

- ❶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❷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 ❸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❹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지원수준 및 한도

❶ 지원 수준

- (임금증가액 보전금)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를 지원(월 최대 60만원)
 - ※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만 지원대상이 됨
- (간접노무비)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지원(2018년 7월 18일 이후 전환자부터 적용)

❷ 지원 인원 한도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지원인원은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
 - * 다만, 직전 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중에 최초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한 달로부터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까지의 월평균 기간제 근로자 수의 120%를 한도로 하며,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회사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를 한도로 함
 - * 파견근로자·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정규직전환은 지원 인원 한도 없음

○ 지급 기간 및 주기

-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 지급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구,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 지원대상

- (임금감소액 보전금) 모든 사업주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대체인력 인건비)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요건

① 소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지원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최근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상 단축
- 근로자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소 2주 이상 전환
- 4대보험에 가입하고,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함(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주 30시간 이하)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연장근로는 월 20시간 이내

②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

- ①의 요건을 만족하는 단축 근로자에 대하여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
- 대체인력 고용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시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단,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 수준) 소정근로시간 단축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

유형	지원대상	회차별 지원액(1개월 단위)
임금감소 보전금	모든 기업	최대 4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
	대규모기업	30만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20만원

- (임금감소 보전금)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보다 더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인 경우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

▶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 초과 35시간 이하인 경우 월 24만원 한도로 지원

※ 임신을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

○ 장려금 지급 제외

❶ 연장근로를 20시간 초과하여 실시한 달

❷ 출퇴근 기록이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

※ ❶ 또는 ❷를 2회 위반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최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지급 기간 및 주기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 지급

- 대체인력의 실 근무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기간이 겹치는 기간(최대 1년) 및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과 간접노무비 지원은 실제 단축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원



3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1.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요건

- (제도 활용)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제도 도입)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할 것

※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서 필요

-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통상 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함

- (연장근로)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유형	장려금 산정 기준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제도활용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선택근무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①최소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또는 ②최소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 각 30분 이상 단축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 수준) 활용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기준	연간총액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주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 단, 선택근무제는 활용횟수 산정없이 활용 근로자 1인당 1주에 10만원 지원

- (지원 인원 한도)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로 하되, 70명(시차출퇴근제는 5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 기간 및 주기

- 실제 활용한 기간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주 단위로 계산

2.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VI. 고용환경개선지원 / 5.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참조(74P)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단, 육아휴직부여 간접노무비 지원 시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제외)

○ 지원요건

① 육아휴직 등 부여 시 간접노무비 지원 요건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② 대체인력 지원 요건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 동 휴가·휴직 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 * 다만, 동 휴가·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2018.7.1. 이후 동 휴가·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부터 적용)
-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제출서류

- ① 간접노무비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1부, 근로자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발령문서)
- ②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1부,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 대장 사본

○ 지원수준

❶ 간접노무비 지원

-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40만원 지원

지원유형	지원대상	희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월 10만원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 육아휴직 부여할 경우 10만원 추가지원(1호 인센티브)

❷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인수인계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 지급 기간 및 주기

❶ 간접노무비 지원

- (기간)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2년 범위
- (주기) 첫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❷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기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 (주기)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의 종료 후 30일이 지난날과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



IV

고용유지지원금

1. 고용유지 지원금
2.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

○ 지원대상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①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②한 후 휴업(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③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④ 사업주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기준달 :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 ① 기준달 말일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경우
- ②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생산량(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 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 ③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 ④ 기준달의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감소 추세
- ⑤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 ⑥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 ⑦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 ⑧ 당해 업종, 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적용할 경우, 기준달 개념과 관계없이 관련증빙서류에 대한 고용센터의 검토에 의해 지원 유무 판단

②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 계획서의 제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와 노사협약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고용유지조치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고용유지조치계획서상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변경전일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근로자대표와의 정상적인 협의과정을 거쳤으면 “합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무방

■ 협의의 방법

사업주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휴업 등의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협의를 거치면 됨.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한 협의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노사합의서, 회의록, 회의개최 시행 공문 중 택일하여 제출 가능

* 변경 계획의 내용이 고용유지조치 기간 단축, 고용유지 대상자 수의 축소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생략 가능

③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휴업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이 20/100이 초과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휴직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④ 계속고용 의무 준수

■ 계속고용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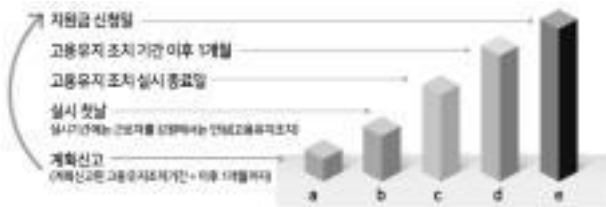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사업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

■ 계속고용 의무기간

고용유지조치 기간이라 함은 고용유지조치 기간(첫날부터 종료일) 이후 1개월 까지를 말함

■ 계속고용 의무기간 산정예시

최소한 b~d



⑤ 지원제외 사유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경우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제외.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 조치실시를 하는 경우 지원 제외.

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원인이 계절적 사유에 따른 사업경영 구조상의 당연한 결과인 경우는 경기변동, 경영사정의 악화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함

■ 고용유지 조치계획 준수의무 위반 시 지원제한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시행된 경우 :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따라 지급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시행된 경우 :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급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50%이상으로 미달하여 시행된 경우 : 전부 부지급

○ 지원수준 및 지원절차

■ 지원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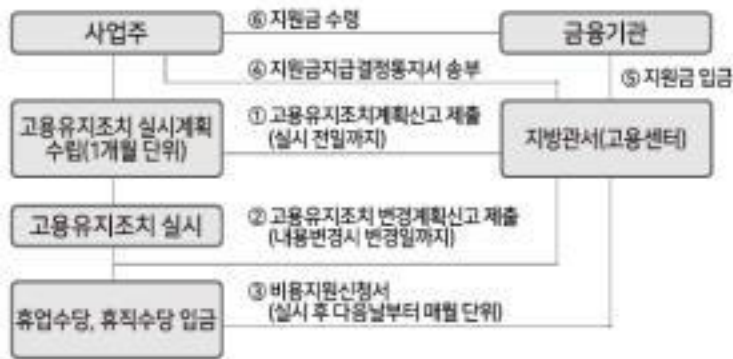
구분	지원수준	
	일반 고용유지지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휴업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1일 한도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 지원, 1일 한도 7만원(단, 대규모기업은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3/4 지원
휴직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1일 한도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 지원, 1일 한도 7만원(단, 대규모기업은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3/4 지원

■ 지원기간

휴업·휴직은 모든 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

■ 지원절차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역(歷)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제출(사업주) ▶ 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주) ▶ 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지급(고용센터)



(1)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의 의미
휴업이라 함은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
기업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이 기준기간보다 20/100 이상을 초과하여 감소된 경우 지원
- 지원요건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歷)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 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총근로시간보다 20/100 이상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금품이 지불 되었어야 함
* 기준기간 : 해당 고용유지 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예】 고용유지 조치 실시일이 '19. 4. 1일인 경우

기준기간			직전3개월	고용유지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
'18. 10월	'18. 11월	'18. 12월	'19.1월 ~ 3월	'19. 4월

* 기준기간에 산정된 총근로시간이 같은 기간 당해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총 근로시간으로 산정함

- 산정예시
'19년 4월의 총 피보험자수 50명인 A기업이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 총 근로시간 산정 예시
 - 고용유지계획서 신고 : '19. 3. 31.(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제출 필요)
 -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 또는 근로시간 조정) : '19.4.1.~ 4.30.(1개월)
 - 기준기간 : '18.10.1. ~ '18.12.31.(3개월)
- * 고용유지조치 실시 직전 3개월('19.1~3월)을 제외한 것은 가능한 정상적인 경영상태의 근로시간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기준기간('18.10월~12월) 월평균 근로시간 :

9,783h(11,500 + 9,450h + 8,400h/3월)

구분	'18.10월	'18.11월	'18.12월	'19.1월~3월	'19.4월
총근로시간	11,500h	9,450h	8,400h		3,360h
소정근로 시간 (1일8h)	9,200h (8h×50명×23일)	8,400h (8h×50×21)	8,400h (8h×50*×1)		
연장근로시간	2,300h (1일 2h×50×23)	1,050h (1일 1h×50×21)	-		
피보험자수	50명	50명	50명		50명
소정근로일수	23일	21일	21일		21일

- * 유의사항 : 기준간의 산정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19년 4월의 피보험자수(50명)와 기준기간 '18년 10월 ~12월의 피보험자수가 동일해야 함. 따라서 기준기간의 피보험자수가 '18년 10월에 80명, 11월에 70명, 12월에 60명으로 다른 경우에도 피보험자수 50명으로 산정
- * 기간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채용과 관련된 이직자의 근로시간으로 산정(이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산정)
- *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연장근로(휴일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상당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휴일근로)만 포함됨. 따라서 일시적·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휴일근로)는 포함 안 됨

■ 고용유지조치기간('19년 4월) 총근로시간 : 3,360h(소정근로일 21일)

- '19.4.1. ~ 4.10.(소정근로일 8일) : 근로자 20명에 대하여 1일 4시간 근로시간 조정 → 2,560h = 8일 × 20명 × 4h + 8일 × 30명 × 8h
- '19.4.11. ~ 4.20.(소정근로일 5일) : 근로자 30명에 대하여 1일 8시간 휴업 → 800h = 5일 × 20명 × 8h + 5일 × 30명 × 0h
- '19.4.21. ~ 4.30.(소정근로일 8일) : 근로자 50명에 대하여 1일 8시간 휴업 → 0h = 8일 × 50명 × 0h

- * 고용유지조치 달(4월)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에서 해당근로자의 근로시간 제외

■ 4월 중 고용유지조치 현황

- 6,423h = 9,783h(기준기간 월평균 근로시간) - 3,360h(4월 총 근로시간)

- 총근로시간 산정시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
 -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 근로자
 -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 관리·감독업무, 감시·단속적 업무, 농림, 축산 등 근로기준법 제 63조에 해당하는 근로자
 - 연봉제, 포괄산정 임금제 등 업무의 성과, 곤란성, 책임의 정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근로자

○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1/2)를 지원

이때, 사용자는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2) 휴직

○ 휴직의 의미

-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함

○ 지원요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휴직수당(유급) 지원금

-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1/2)를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1년)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 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2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경기의 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

(1)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2) 지원절차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 접수(청·지청)
✓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청·지청)
✓	계획서 및 조사보고서 송부(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개최(심사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청·지청)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사업주)

- * 고용유지계획 수립 : 노사협의(합의)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로그램, 업무복귀 계획 등
- * 신청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30일전 까지 관할 지방관서 제출 ▶ 심사위원회 심의
▶ 승인결과 통보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재고량	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생산량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매출액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재고량, 매출액 추이	재고량이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기타	해당업종, 지역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② 다음의 무급휴업·무급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함

무급휴업	•기간 :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19명 이하 : 50%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무급휴직	•기간 : 9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사전실시(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3) 고용유지계획서 반력대상

-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4) 지원금 결정

-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6.6만원)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최대 180일 한도 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사업주 지원금)

(5) 고용유지실시 및 지원금 지급

-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고용유지계획서 승인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요청하여야 함
-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지원금 대상자 명단, 통장사본 등 제출)



V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1. 청년내일채움공제
2.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3.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4.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1

청년내일채움공제

○ 사업개요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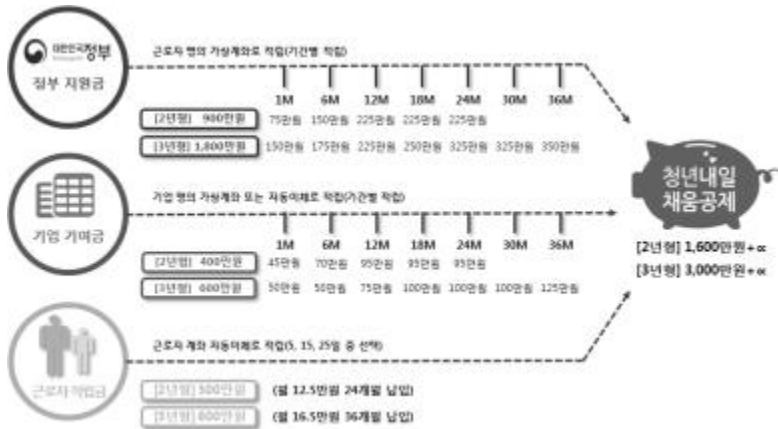
○ 지원요건

	2년형	3년형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3개월 이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월 임금 350만원 이하 가입 가능	
	* 단,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가입 가능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만 가입 가능 * 3년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해당 기업만 가입가능	

○ 지원수준 및 기간

	2년형	3년형
청년	2년간 취업지원금 900만원 지원	3년간 취업지원금 1,800만원 지원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 지원(기업 적립분 400만원 + 기업 순지원 50만원)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 지원(기업 적립분 600만원 + 기업 순지원 70만원)

[2년형,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 신청절차

- (가입 신청) www.work.go.kr/youngtomorrow 에 참여 신청
→ 요건 심사 후 www.sbcplan.or.kr 청약 가입 신청
- (지원금 신청) 정규직 채용 이후 1, 6, 12, 18, 24, 30, 36월분 임금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

2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 사업개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

○ 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 지원요건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①, 신규채용 청년 6개월 이상 고용유지^②, 기업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 증가^③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임.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②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신규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

③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 지원수준 및 기간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 30인 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 지원 예시 >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30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30~99인	x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100인 이상	x	x	900만원	1,800만원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 신청주기 및 신청방법

- (신청주기)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
 - * 다만, 청년의 최초 채용시에는 6개월 이상 단위로, 이후에는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
- (신청방법)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 신청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 관련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

○ 지원요건

-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1~23%)을 초과하여 고용

구 분		지원기준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금융 및 보험업(64~66)		1%
건설업(41~42) 숙박 및 음식점업(55~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4%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운수업(49~5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6%
광업(05~08)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7%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75)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75310)	12%
	건축물일판청소업(74211)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75330)	23%
	○ 기타 업종	7%
	국제 및 외국기관(99)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23%
그 밖의 업종		2%

○ 지원 수준 및 기간

- 지원기준율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근로자수의 20%까지(대규모기업 10%) 한도.
다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지원기준율 산정 시 제외

- 지급절차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4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연장 제도 도입 촉진

○ 지원대상

-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요건

- (기업요건)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를 도입한 기업

- ① 현행 정년을 연장(정년연장)
- ② 현행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 ③ 현행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재고용(재고용)

- (근로자요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직 중인 근로자

- * 다만, ① 해당 사업에서 정년의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1년 미만인 사람, ②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④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⑥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 또는 월 임금이 6,860,000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당월에 지원제외)

○ 지원수준 및 기간

- 정년 이후 계속고용 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20.1.1)로부터 최대 2년

○ 신청절차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VI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1.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2.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3.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4.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융자 지원
5.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

○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보육교직원 자격을 가진 원장과 보육교사를 고용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

○ 지원수준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월 중 유급 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원장, 취사부 수를 곱한 금액에서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 빼고 산정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보육영유아 수(해당 월 말일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되, 지원금을 신청하는 전월 말일 기준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 빼고 산정

지원내역	지원한도					
	월평균 근무 시간		대규모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주40시간 이상		60만원		120만원	
	주30시간 이상		55만원		105만원	
	주20시간 이상		40만원		75만원	
	주15시간 이상		30만원		45만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현원별기준	40명미만	40~59명	60~79명	80~99명	100명이상
	지원금(월)	200만원	280만원	360만원	440만원	520만원
	*공동직장어린이집인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수 및 자녀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 지원신청시기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 해당 월분에 대하여 해당월 14일 이전까지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매 분기분(3개월)에 대하여 매 분기
시작월(1월, 4월, 7월, 10월) 14일까지

○ 지급절차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서 제출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
금 지급

※ 신청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kcomwel.or.kr/escac)에
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서울직장보육지원센터 02)2670-0411~27
- 근로복지공단 부산직장보육지원센터 051)320-8182~8
- 근로복지공단 대전직장보육지원센터 042)870-9111~7

2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비·교재교구비 무상 지원

○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 지원수준 및 한도

■ 무상지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60~90% 범위내에서 한도액 3억원(사업주 단체 6억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4억원(공동형은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고, 교재교구비는 5천만원**(교체시는 3천만원까지)까지 무상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단독형 4억원, 공동형은 20억원 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7천만원 한도

○ 지급절차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신청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
(www.kcomwel.or.kr/escac)에서 다운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서울직장보육지원센터 02)2670-0411~27
- 근로복지공단 부산직장보육지원센터 051)320-8182~8
- 근로복지공단 대전직장보육지원센터 042)870-9111~7

3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설치·개선·교체·구입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내용
 - 고령자 친화적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개선·교체·구입비용(시설·장비 투자비 전액)
- 지원수준
 - 융자조건 : 사업주당 10억 원 한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금 1억 원당 1명의 (준)고령자 신규 고용 조건
 - 대출금리 : 연 1%

융자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한국SC은행, 수협은행

- 신청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 신청일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고령자나 고령자를 융자대상시설 등의 설치·개선·교체·구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과 동일한 품목으로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

○ 제출서류

-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신청서 및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시설·장비 개선계획서 등
- 융자 대상자 결정 심사 시 자금조달 및 상환능력에 대한 확인 자료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 가능 관련 서류(담보능력 등)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업체(예정지 포함)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상담 후 신청
-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1588-1519),
공단 본부 고용창출부(☎031-728-7065)

4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용자 지원

○ 지원대상

- 모든 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요건

- 교대제도입, 실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제도도입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 - 제도도입 직전 6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용자 지원대상 시설 등]

투자 종류	지원금의 용도
설비투자비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된 기계, 기구, 사무기구, 안전 설비 등에 투자한 비용 * 총 설비투자금의 10% 범위내에서 휴게시설, 복지시설 설치에 활용 가능
시설 건립비	생산에 필요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개축에 소요되는 건축비 * 토지 매입비 제외
시설 매입비	생산에 필요한 건축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매입에 소요되는 매입비 * 토지 매입비 제외
시설 임차비	일자리 함께하기를 위한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보증금 * 월세는 제외
시설 개보수비	기존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시설 전환비	소유·매입·임차 건물의 시설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기존 시설을 확충하거나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지원내용

- 총 투자비의 2/3범위 내에서 10억원 한도로 증가근로자 수 1인당 1억원 지원
- 상환조건 : 3년거치 5년 균등 상환, 이율은 우선지원대상기업 1%, 대규모기업 2%

융자가능
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융자는 담보·신용 등의 사유로 대행금융기관이 대출을 거부하
거나 일부만 대출할 수도 있음

○ 신청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동일한 품목으로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

○ 제출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대상기업 결정 후, 금융기관에 대출 요청 시 자금조달 및 상환능력이 부족하여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서 제출 시 금융기관이 발급한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 첨부
 -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문의처



- 사업참여 신청 및 승인 : 사업장 관할지역의 고용센터

※ 대출약정체결관련은 근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 052)704-7357로 문의

5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지원요건
 -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아래 표의 지원대상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
 - * 근무혁신 이행: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근무혁신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인프라 구축비 지원대상 시설]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 그룹웨어, 원격접속,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 클라우드 사용료, 인터넷 통신료 등	직접 지원

* PC, 노트북 등 근로자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아래의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지원금 구분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5/10
근무혁신 인프라	근무혁신 우수기업 SS등급	8/10
	근무혁신 우수기업 S등급	6/10
	근무혁신 우수기업 A등급	5/10

- 신청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동일한 품목으로 시스템·시설·장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

○ 제출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견적서
 -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문의처



- 사업참여 신청 및 승인 : 사업장 관할지역의 고용센터



VII

지역고용촉진지원금

1.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고용위기지역: '19.12월 현재 7개 지역

(지정기간: '18.4.5~'20.4.4) ①군산시, ②울산광역시 동구, ③거제시, ④통영시, ⑤고성군, ⑥창원시 진해구

(지정기간: '18.5.4~'20.5.3) ⑦목포시·영암군

○ 지원내용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1/2(대규모기업은 1/3)을 1년간 지원**

• 이전·신설·증설은 원칙적으로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임차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1,000만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있을 때에 인정

*• 지원 상한액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로 정함('20년의 경우 1일 상한액은 6.6만원)

○ 지원요건

- ① 지정기간에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②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시행
- ③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될 것
- ④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시작일 현재 해당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그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장에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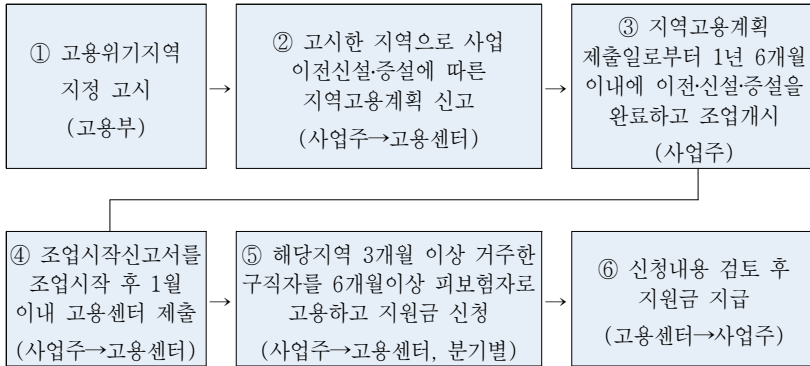
⑤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일 것

- 지원 제외 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①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주점업, ② 부동산업, ③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④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⑥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지원 제외 사업: 청소년유해업소, 계절적·한시적 사업, 고용이 불분명한 사업 등

⑥ 지역고용계획의 실시 상황과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추고 지원금을 신청할 것

○ 지원절차



VIII

참고사항

1. 고용장려금의 중복 지원 제한·상호조정
및 부정행위 조치
2.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3. 신종년 적합직무

1 고용장려금의 중복 지원 제한·상호조정 및 부정행위

1 중복지원 제한 및 상호조정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과 중복지원 제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
 -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④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지원금 간의 상호조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 * 제28조의 4 관련 규정은 개정절차 진행중(3월 예정)

①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	①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제17조에 따른 비용 지원,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제28조의 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	②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 실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2. 제24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3. 제25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4.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5.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6.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7.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8.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9.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						
③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	③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④ 상호조정비용 고시에 따라 지급	④ 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비용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39호) <table border="1" data-bbox="502 986 1038 1258"> <thead> <tr> <th>상호 조정 비율</th><th>지원금 또는 장려금</th></tr> </thead> <tbody> <tr> <td>70%</td><td>「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 70%</td></tr> <tr> <td>100%</td><td>「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 100%</td></tr> </tbody> </table>	상호 조정 비율	지원금 또는 장려금	7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 70%	10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 100%
상호 조정 비율	지원금 또는 장려금						
7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 70%						
10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 100%						
⑤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	⑤ 대통령령 제2260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가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만을 지급한다.						
⑥ 해당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⑥ 근로자가 제28조, 제28조의2 따른 지원금 중 둘 이상의 지원						

2 부정행위 조치

○ 부정행위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 하는 행위

○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

▶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지원금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을 명령함

▶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지급받으려고 한 경우 포함)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5배에 해당 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

※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음

▶ 이 외에도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

※ 부정행위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의 불이익(2020.8.27. 이전) :
부정수급액의 반환 + 부정수급액의 2배~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
+ 향후 3개월~1년간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지급제한

▶ 2020.8.28. 이후에는 개정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형사처벌 신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공모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행위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의 불이익(2020.8.28. 이후) :
부정수급액의 반환 + 부정수급액의 2배~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
+ 향후 3개월~1년간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지급제한+ 형사처벌

2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판단

-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별표1]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근로자 수
1. 제조업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업	H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

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 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신중년 적합직무

직무 분야 (14개)	신중년 적합직무 (70개)	수행업무	세부직업
경영사무 관련 전 문직 및 사무직	①경영/인사 전문가	경영과 관련된 제안, 분석,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사, 노무 등 인적 자원 및 노사관계 관련 전문가가 여기에 분류된다.	▶ 0221경영·진단 전문가 ▶ 0222인사·노무 전문가
	②광고/조사/상품 기획/행사기획/감정 전문가	고객의 요구와 시장 흐름을 분석하여 새로운 상품을 기획 및 개발, 판매 촉진 전략 수립 등의 방안과 기법을 연구하거나 조언한다.	▶ 0241 광고·홍보 전문가 ▶ 0242 조사 전문가 ▶ 0243 상품 기획자 ▶ 0244 행사 기획자 ▶ 0293 통계 사무원 ▶ 0234 감정 전문가
	③경영지원 사무원	기업 또는 단체 내부의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획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거나 영업 및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사무를 처리한다. 채용, 교육 훈련, 노무관리 등 인사 업무를 담당한다. 기업 또는 단체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 업무 전반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단, 지식이나 능력이 요하지 않는 단순 사무 업무는 제외한다.	▶ 0261 기획·마케팅 사무원 ▶ 0262 인사·교육·훈련 사무원 ▶ 0263 총무 사무원 ▶ 0264 감사 사무원
	④회계/경리 사무원	회계 사무는 사업체 제반 거래사항을 기록, 정리하고 원가계산을 통하여 제조원가를 산출하며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실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결산 절차에 따라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경리업무는 청구서, 송장, 지불계정 및 수취계정, 예산 및 기타 일상적인 기록을 정해진 방식에 따라 계산하고 작성하며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0271 회계 사무원 ▶ 0272 경리 사무원
	⑤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제품의 무역(해외거래)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고, 차량·철도·선박·항공 등 운송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한다. 자재의 구매 및 물품 관리와 관련된 사무와 제조업체의 생산 활동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거나 생산된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0281 무역 사무원 ▶ 0282 운송 사무원 ▶ 0283 자재·구매·물류 사무원 ▶ 0284 생산·품질 사무원
	⑥금융/법률 사무원	금융/법률 분야에서 전문적인 사무업무를 수행한다.	▶ 0315 손해사정사 ▶ 0222 법률 사무원

연구 관련직	⑦인문·사회과학 연구원	철학, 역사학, 언어학, 심리학 등 인문과 학과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사회복지학 등 사회과학 관련 분야 지식을 응용하여 이 론 및 운영기법을 개선, 개발하며 학술적 논문 및 보고서를 작성한다.	▶ 1101 인문과학 연구원 ▶ 1102 사회과학 연구원
	⑧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물리학·생물학·화학·지구 및 기상과학·천문 및 우주과학 등 자연과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관련 과학 자의 지휘, 감독하에 시험 등 기술적 업 무를 수행한다.	▶ 1211 자연과학 연구원 ▶ 1212 자연과학 시험원
	⑨생명과학 연구 원 및 시험원	생물학, 의학, 식품, 농업, 임업 등 생명과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며 관련 과학자의 지휘, 감독하여 시험 등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생명과학 연구 기관, 식품제조업체, 제약회사, 보건, 연구 및 교육기관, 컨설팅회사, 정부 등에서 일한다.	▶ 1221 생명과학 연구원 ▶ 1222 생명과학 시험원 ▶ 1223 농림어업 시험원
정보통신/방송 관련 기 술·기능 직(기능 직의 보 조원은 제외)	⑩컴퓨터하드웨어 통신공학 기술자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 주변장치, 입력 장치 등 컴퓨터 구성 요소인 하드웨어 및 유·무선 통신망 등 통신공학 기기, 기 술, 네트워크를 연구, 설계, 개발, 시험한 다. 또한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기기의 제조, 설치를 관리·감독하기도 하며 이와 관련하여 기술 자료와 감리를 수행할 수도 있다.	▶ 1311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 1312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⑪컴퓨터시스템 전문가	컴퓨터시스템의 입력 및 출력 자료의 형 식, 자료 처리 절차와 논리, 자료 접근 방법 등 컴퓨터시스템의 전반 요소를 구 체적으로 결정 및 설계하고 분석한다. 이 직 업은 IT분야와 관련된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정보통신 컨설턴트를 포함한다.	▶ 1320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⑫소프트웨어 개발자	컴퓨터 시스템의 자체 기능 수행명령체계인 시스템소프트웨어와 사용자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명령을 수행하는 응용 프로 그램(애플리케이션)을 연구 및 개발하고 설계하며 이와 관련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작성한다.	▶ 133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 133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 1333 웹 개발자 ▶ 1339 기타 컴퓨터 전문가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⑬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수집 자료의 효용성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설계하고 개선하거나 수집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처리하여 분석한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장비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개발, 기획하고 설계 및 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스템 사용자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훈련을 시키며 사용자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해 준다.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전문가도 여기에 분류된다.	▶ 1341 데이터 전문가 ▶ 1342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 1343 정보시스템 운영자 ▶ 1344 웹 운영자
⑭정보보안 전문가	해킹이나 각종 바이러스 발생에 대비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전산망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안 상태를 점검하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안 상태를 점검하며 보안을 위한 다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를 말한다. 정보시스템상 개인 정보의 유출을 막고 관련 보안 체계를 개발하는 전문가도 이 분류에 포함된다.	1350 정보보안 전문가
⑮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통신 및 방송 기술자의 지휘 감독하에 통신 및 방송 장비의 개발, 운용 및 보수에 관련된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 1360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⑯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컴퓨터, 이동전화기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설치하고 수리한다.	▶ 8411 컴퓨터 설치수리원 ▶ 8412 이동전화기 수리원 ▶ 8419 기타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⑰방송·통신장비 설치·정비원	방송장비, 통신장비, 통신케이블 등 방송이나 통신에 사용되는 장비를 설치하고 보수, 수리한다.	▶ 8421 방송장비 설치수리원 ▶ 8422 통신장비 설치수리원 ▶ 8423 방송통신인터넷 케이블 설치수리원
⑱연극·영화·방송 기술자	연극, 영화, 방송에 필요한 촬영, 무대장치, 편집 등의 기술적인 업무를 계획하고 지도, 조정한다. 조명감독, 미술감독, 무대감독, 음향감독과 촬영과정 전반을 기록하는 스크립터도 여기에 분류한다.	▶ 4164 촬영 기사 ▶ 4165 음향·녹음 기사 ▶ 4166 영상녹화편집 기사 ▶ 4167 조명·영상 기사

의료/보건/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단순직 제외)	㉑간호사	의사의 진료를 돕고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된 간호기술에 따라 치료를 행하며 의사 부재시에는 비상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환자의 상태를 점검, 기록하고 환자나 가족에게 치료, 질병 예방에 관한 설명을 해준다. 조산사는 병원, 의료기관 및 가정에서 산모의 임신, 분만, 산후 처치를 보조하고 정상 분만을 유도하며 신생아 및 임신부나 산모를 간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3040 간호사
	㉒영양사	건강 증진 및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개인 및 단체에 균형 잡힌 음식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단을 계획하고 조리 및 공급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3050 영양사
	㉓의료기사치료사 재활사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는 질병 및 장애의 진단 또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나 기술적 장비를 조정한다.	▶ 3061 임상병리사 ▶ 3062 방사선사 ▶ 3063 치과기공사 ▶ 3064 치과위생사 ▶ 3065 물리 및 작업 치료사 ▶ 3066 임상심리사 ▶ 3067 재활공학 기사 ▶ 3069 기타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
	㉔보건·의료 종사자	의사가 수행하는 것보다 범위와 복잡성에서 한정된 진단 및 치료 업무를 지원·수행하는 자로서 기타 예방·처치에 관한 직무에 종사한다.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를 돌보거나 치료사를 보조하여 재활, 물리, 언어, 작업치료 등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기타 보건·의료 종사자를 포함한다.	▶ 3072 위생사 ▶ 3074 의무기록사 ▶ 3075 간호조무사
사회복지/교육 관련 종사자	㉕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사회 문제나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사회복지 관련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진단,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2311 사회복지사 ▶ 2312 상담 전문가 ▶ 2313 청소년 지도사 ▶ 2314 직업상담사
	㉖문리·기술·예능 강사	정규학교 이외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을 제외한 각종 교육기관 또는 가정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자로서 특정 직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취업, 진학을 위하여 배우려는 학생을 가르친다.	▶ 2141 문리·어학 강사 ▶ 2142 컴퓨터 강사 ▶ 2143 기술·기능계 강사 ▶ 2144 예능 강사 ▶ 2149 기타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문화/출판/디자인(캐드) 관련 종사자	㉔번역가 및 통역가	한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옮겨 표현하는 전문적 작업을 수행하거나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순조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대화 내용을 상대방 언어로 전환, 표현하여 전달해 주는 자를 말한다.	4112 번역가 및 통역가
	㉔출판물 전문가	출판물 기획이나 편집 방향을 세우고 출판물에 수록될 원고를 조정한다.	4113 출판물 전문가
	㉔학예사서사기록물관리사	박물관, 도서관, 화랑 등에서 문화재나 서적 등을 발굴하고 보관, 정리, 관리한다.	▶ 4131 학예사 및 문화재 보존원 ▶ 4132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㉔디자이너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제품, 패션, 인테리어, 미디어 콘텐츠 등을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혹은 실용성 있게 설계하고 디자인한다. ※ 단 창의력이 요하지 않고 기존 도안대로 작업하는 직무는 제외한다.	▶ 4151 제품 디자이너 ▶ 4152 패션 디자이너 ▶ 4153 실내장식 디자이너 ▶ 4154 시각 디자이너 ▶ 4155 미디어 콘텐츠 디자이너
	㉔제도사(캐드원)	여러 분야의 기술자, 건축가 또는 산업디자인자의 지휘하에 건축물과 제품이 실제 생산될 수 있도록 설계도를 작성한다.	▶ 1591 제도사
영업/서비스/음식 관련 종사자 (단순직 제외)	㉔영업 및 상품 중개인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일을 수행한다. 농수산물, 예술품, 기타 상품류를 중개하거나 경매를 통하여 판매한다. 이중 영업원은 영업품목의 특성 등에 따라 기술 영업원, 자동차 영업원, 제품·광고 영업원으로, 영업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외 영업원을 구분하고 있다.	▶ 6121 기술 영업원 ▶ 6122 해외 영업원 ▶ 6123 자동차 영업원 ▶ 6124 제품·광고 영업원 ▶ 6125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 6129 기타 기술 영업·중개 종사원
	㉔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결혼을 원하는 남녀 고객에게 각자의 이상에 가장 부합하는 상대를 찾아내어 만남을 주선해 주는 사람인 결혼상담원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객관적인 데이터에 입각해 최적의 배우자와 연결시켜 준다. 웨딩플래너는 결혼하기 전부터 신혼여행까지의 모든 과정을 기획하고 대행한다.	▶ 5121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㉔여행 서비스원	국내외 여행상품을 기획, 개발하여 고객에게 추천, 판매하고 여행과 관련된 예약·발권·안내·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전시시설이나 문화 및 자연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 5211 여행상품 개발자 ▶ 5212 여행 사무원 ▶ 5213 여행 안내원 및 해설사
	㉔주방장 및 조리사	호텔, 한식당, 중식당, 일식집, 레스토랑	▶ 5312 한식 조리사

		등에서 주방과 조리 관련 업무 전반을 책임지거나 국, 찌개, 국물요리, 찜, 조림, 무침, 육류, 생선류, 면류, 분식 등의 다양한 음식을 조리하며 칵테일, 커피, 차, 등의 음료를 준비한다. ※ 단, 집단급식소·어린이집, 병원 등에서 요리하는 직무는 제외한다.	▶ 5313 중식 조리사 ▶ 5314 양식 조리사 ▶ 5315 일식 조리사
	㉔제과·제빵원	밀가루, 쇼트닝, 설탕, 소금, 팽창제, 물 등을 배합하고 제빵용 기계와 기구를 이용하여 반죽, 성형, 굽기, 장식 등의 과정을 거쳐 빵을 만들거나 케이크, 파이, 과자 등을 제조하고 장식하는 자를 말한다.	8711 제과·제빵원
건설 관련 기술 (엔지니어) 및 기능직	㉕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건축, 토목, 조경, 도시교통, 측량지리정보 등의 분야에서 관련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계획 및 설계, 사업관리, 공사 관리, 감독, 연구개발, 기술자문, 감리, 품질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1401 건축가 ▶ 1402 건축공학 기술자 ▶ 1403 토목공학 기술자 ▶ 1404 조경기술자 ▶ 1405 조경원 ▶ 1405 도시교통 전문가 ▶ 1406 측량지리정보 전문가 ▶ 1407 건설자재 시험원
	㉖건설구조 기능원	건설 및 기타 건축물의 기초나 골조 그리고 벽, 바닥, 문틀 등 구조적으로 주요한 부위를 만들기 위해 강구조물 및 경량 철골 부재, 철근, 콘크리트, 석재, 벽돌, 목재 등을 사용하여 설치, 시공하거나 보수하는 일을 한다. 전통한식 기법으로 한옥이나 궁궐, 절 등 전통건축물을 만드는 직업도 포함된다. ※ 단, 기능을 요하지 않는 건설단순 직무, 기능인력의 보조 업무 등은 제외한다.	▶ 7011 강구조물 가공원 및 건립원 ▶ 7012 경량철골공 ▶ 7013 철근공 ▶ 7014 콘크리트공 ▶ 7015 건축 석공 ▶ 7016 건축 목공 ▶ 7017 조적공 및 석재 부설원 ▶ 7019 기타 건설 구조 기능원
	㉗건축마감 기능원	골조가 세워진 건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보온, 방수, 위생, 안전, 아름다움을 위해 내·외부 벽체나 바닥, 천장, 문, 창 등을 대상으로 미장, 방수, 단열, 바닥재 시공, 도배, 유리 부착, 도장, 세시 설치 등의 작업을 한다. ※ 단, 기능을 요하지 않는 건설단순 직무, 기능인력의 보조 업무 등은 제외한다.	▶ 7021 미장공 ▶ 7022 방수공 ▶ 7023 단열공 ▶ 7024 바닥재 시공원 ▶ 7025 도배공 및 유리 부착원 ▶ 7026 건축 도장공 ▶ 7027 세시 조립·설치원 ▶ 7029 기타 건축 마감 기능원

	㉔배관공	건물 및 기타 구조물, 플랜트,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등에 물, 증기, 가스, 공기, 연료, 화학물 또는 기타 물질을 운송, 공급하는 각종 배관 설비를 수공구 및 동력공구를 사용하여 가공·조립, 설치, 수리하는 일을 한다.	▶ 7031 건설 배관공 ▶ 7032 공업 배관공 ▶ 7039 기타 배관공
운전/운송 기능직	㉔화물차·특수차 운전원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은 단거리 또는 장거리 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트럭 같은 차량을 운전한다. ※ 단, 단순배달, 납품 등을 위해 화물차는 운전하는 것은 제외한다.	▶ 6223 화물차·특수차 운전원
	㉔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제품, 반제품, 중간소재, 자재, 재료 등의 중량물을 필요한 위치와 목적에 따라 운반, 교환, 장입, 적재하기 위하여 기중기를 운전한다.	▶ 6230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㉔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건설 또는 채굴 기계를 운전, 조작하여 흙이나 유사 물질을 대상으로 굴착, 운반, 정지, 천공,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살포 등의 일을 하거나 영농 및 임업에 사용되는 동력기계 장비를 운전, 조작한다. ※ 단, 단순 트럭 운전, 신호수 등과 같이 기능이 요하지 않는 직무는 제외한다.	▶ 7040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공학관련 기술(엔지니어) 및 시험원	㉔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발전, 운송, 생산 등을 위한 기계장치와 시스템을 연구, 설계, 개발하며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휘·감독한다. 여기에는 산업용 및 개인용 로봇을 가동하기 위해 특별기능에 따라 프로그램을 작성, 운영, 통제하는 로봇기술과 로봇 자체를 연구, 설계, 개발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기계장치와 시스템의 안정성, 성능 등 품질 시험 및 분석 등의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 1511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512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513 기계로봇공학 시험원
	㉔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금속과 합금, 시멘트 등 금속재료(비금속) 공학을 연구, 설계, 개발하며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휘·감독한다. 또한 이들은 금속 및 비금속의 물리적 특성, 성능 등 품질 관련 시험 및 분석 등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 1521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522 금속재료공학 시험원
	㉔전기·전자공학	전기·전자시스템 및 전기·전자 장비, 부품을	▶ 1531 전기공학 기술자

	기술자 및 시험원	연구, 설계, 개발하며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휘, 감독한다. 또한 이들은 전기전자 시스템, 장비, 부품의 무결성과 물리적 특성, 성능 등 품질 관련 시험 및 분석 같은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및 연구원 ▶ 1532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533 전기전자공학 시험원
	④9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화학제품, 화학공정 및 장비를 연구, 설계, 개발하며 산업화학, 플라스틱, 제약, 자원, 펄프 및 식품가공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감독한다. 또한 화학과 관련된 성분, 특성 등 품질 시험 및 분석 같은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화학공학은 석유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농약, 비료, 도료제품, 화장품, 비누제품 등으로 세분화된다. 의약품 기술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 1541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542 화학공학 시험원
	④9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채광, 석유 또는 가스층 채취 및 추출과 개발, 유지를 연구하고 특정 재료, 제품 및 공정의 기술적 분야에 관하여 연구, 개발, 시험하는 에너지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과 환경보전에 위협이 되는 것을 예방, 통제하며 개선과 관련된 공학적인 일을 설계하고 계획, 수행하거나 폐기물 처리, 현장 개선이나 공해방지 기술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공학기술자와 시험원을 포함한다. 위생 및 환경과 관련된 불만을 조사하고 음식점, 식품가공업체, 호텔 등 사업장의 위생, 공해 관리, 위험물처리장 정부 규정에 맞는지 검사하는 보건위생환경 검사원도 여기에 포함한다.	▶ 1551 가스·에너지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552 가스·에너지공학 시험원 ▶ 1553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554 환경공학 시험원 ▶ 1555 보건위생환경 검사원
	④7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신소재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섬유를 개발하고 섬유제품 제조를 위한 각종 공정에 관한 연구와 개발 및 시험, 분석을 한다. 또한 섬유의 성형처리 및 제작공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섬유 견본으로 실의 특성, 인장력, 수축 및 손상의 정도, 염료의 특성 등을 측정, 검사, 분석한다.	▶ 1561 섬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562 섬유공학 시험원
	④8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과학 및 공학 원리를 적용하여 식품 및 식재료를 연구, 개발하고 제품의 생산을 위한 생산 기술 개발,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 또한 각종 음식료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이나 원료 중의 비소, 납을 비롯한 중금속과 미네랄 성분을 시험, 분석한다.	▶ 1571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572 식품공학 시험원

	㉔소방·방재·산업 안전·비파괴 기술자	소방·방재·산업 안전, 위험관리 등 재해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을 연구, 개발하며 시설을 설계, 시공, 감리, 검사한다. 또한 재해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컨설팅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 및 계도, 개선, 건의 등을 수행한다.	▶ 1581 방재 기술자 및 연구원 ▶ 1582 소방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583 소방공학 시험원 ▶ 1584 산업 안전원 및 위험 관리원 ▶ 1585 비파괴 검사원
기계/금속 관련 기능직 (단순생산직, 기능직의 보조업무 등은 제외)	㉕기계장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운송장비를 제외한 공업용 또는 농업용 기계 및 기계식 장비를 설치, 검사, 정비 및 수리한다.	▶ 8111 공업기계 설치·정비원 ▶ 8112 승강기 설치·정비원 ▶ 8113 물품이동장비 설치·정비원 ▶ 8114 냉동·냉장·공조기 설치·정비원 ▶ 8115 보일러 설치·정비원 ▶ 8116 건설·광업 기계 설치·정비원 ▶ 8119 농업용 및 기타 기계장비 설치·정비원
	㉖운송장비 정비원	항공기, 선박, 기관차, 전동차,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를 조정, 유지, 정비, 수리, 교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8121 항공기 정비원 ▶ 8122 선박 정비원 ▶ 8123 철도기관차·전동차 정비원 ▶ 8124 자동차 정비원
	㉗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용	각종 금속공작기계, 수공구 및 정밀측정기를 사용하여 금형을 제작, 보수, 정비하며 자동 및 반자동 공작기계를 조작하여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한다.	▶ 8131 금형원 ▶ 8132 금속 공작기계 조작용
	㉘냉·난방 설비 조작용	주기관 및 보조기관에 증기를 공급하는 보일러를 조작하거나 건물 냉장 관련 기기를 조작한다.	▶ 1560 냉난방 설비 조작용
	㉙기계 조립원 (운송장비 제외)	운송장비를 제외한 기계나 기계장비, 기계부품을 조립하거나 조립한 결과를 검사한다.	▶ 8161 일반기계 조립원 ▶ 8162 금속기계부품 조립원
	㉚운송장비 조립원	자동차와 자동차 부분품을 조립 또는 검사하며 항공기, 선박, 철도기관차, 전동차 그 외 운송장비를 조립하거나 조립 결과를 검사한다.	▶ 8171 자동차 조립원 ▶ 8172 자동차 부품 조립원 ▶ 8173 운송장비 조립원
	㉛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용	금속의 재련, 정련 과정에서 다기능 공정통제장치를 조작하거나 제어하며 제1차 형태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단일 기능을 가진 기기를 조작하거나 전체 생산공정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기기를 조작한다.	▶ 8211 금속가공 제어장치 조작용 ▶ 8212 금속가공 기계 조작용
	㉜판금원 및 제판원	금속구조물 같은 금속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금속소재를 절단, 용접, 가공하는	▶ 8221 판금원 ▶ 8222 판금기조작용

		업무를 수행한다. 판금기 및 제관기를 조작하여 금속재료 및 금속판을 각종 금속 제품 및 그 부분품을 제작, 설치,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단 덕트생산기 조작처럼 기능이 요하지 않는 단순업무는 제외한다	▶ 8223 제관원 ▶ 8224 제관기조작원
	㉝단조원 및 주조원	금속을 가열한 후 해머 등을 사용하여 금속을 두드려서 금속제품을 제조하거나 주형을 만든 후 주물 원료를 용해 및 주입하여 주조물을 제작한다. 철 및 비철금속 주물을 생산하기 위해 단조기나 주조기를 조작하는 직업을 포함한다.	▶ 8231 단조원 ▶ 8232 단조기조작원 ▶ 8233 주조원 ▶ 8234 주조기조작원
	㉞용접원	각종 기계나 금속구조물 및 압력용기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용접장비나 기기를 조작하여 용접업무를 수행한다. 용접용 기계 및 로봇을 조작한다.	▶ 8241 용접원 ▶ 8242 용접기조작원
	㉟도장원 및 도금원	다양한 제품 표면에 페인트, 에나멜, 래커 또는 코팅 기기나 분사 기기를 조작하거나 도금, 금속 분무 관련 기계를 조작한다.	▶ 8251 도장원/도장기조작원 ▶ 8252 도금·금속분무기조작원
전기/전자 관련 기능직 (단순생산직 제외)	㊱전기공	전기설비 시설을 설치하고 수리한다. 산업 전기공, 내선 전기공, 외선 전기공이 여기에 분류된다.	▶ 8311 산업 전기공 ▶ 8312 내선 전기공 ▶ 8313 외선 전기공
	㊲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사무용 전자기기, 가전제품, 영상, 음향기기, 현금인출기, 포스시스템, 의료기기, 광학기기 등을 설치하고 제품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며 오작동 시 수리하는 일을 수행한다.	▶ 8321 사무용 전자기기 설치·수리원 ▶ 8322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 8329 기타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㊳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전기를 생산하고 배전을 통제하는 기계 장비를 조작한다. 각종 발전소, 전기통신공사, 일반제조업체 등 비상전력설비가 있는 업체의 자가발전 부서에 고용되어 있다.	▶ 8330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㊴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건물, 아파트, 공장 및 기타 전기·전자 설비를 조작, 유지, 보수한다.	▶ 8340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화학/의료/식품/기타 기능직 (단순생산직 제외)	㊵석유·천연가스 제조 제어장치 조작원	석유 및 천연가스 제조를 위하여 화학물이나 천연원료를 성분별로 분리하거나 정제하는 관련 장치를 조작한다.	▶ 8511 천연가스 제조 제어장치 조작원
	㊶섬유·의복기능직	직물을 표백 염색 세척하는 기계를 조작한다 패션디자인을 바탕으로 패턴을 종이에 그려 옷본을 만든다 ※ 단 재봉원, 재단원 등은 제외한다.	▶ 8613 표백염색기 조작원 ▶ 8621 패턴사
	㊷가구·귀금속·간판 기능직	목재, 가구, 귀금속, 간판 등의 분야에서 설치와 수리를 담당하거나 조작과 조립 기능과 관련한 일을 수행한다.	▶ 8831 가구 제조·수리원 ▶ 8842 귀금속보석 세공원 ▶ 8852 간판 제작·설치원

신직업	㉞경영/마케팅 관련 신직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 사회 문제, 기업윤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개발·운영한다.	▶ 지속가능경영 전문가
		기업 차원에서 각종 재난 발생 시 사고 대응 및 2차 피해방지는 물론 기업활동의 사업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자 활동,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턴트 활동, 그리고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활동을 수행한다.	▶ 기업재난관리자
		할랄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품목 등에 대해 관련 절차, 할랄제품 마케팅 및 홍보 수출무역 등과 관련한 사항을 컨설팅한다.	▶ 할랄전문가
	㉟사회복지/교육 관련 신직업	초중고 학생이 관심을 보이는 직업을 보유한 기업 또는 사업장을 찾아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 기회를 발굴하고 관련 프로그램 기획한다.	▶ 진로체험코디네이터
		퇴직 후 이직직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제2의 직업을 추천하고 이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을 한다.	▶ 전직지원전문가
		고객의 노후 건강관리법, 자손과의 인간관계, 노후설계 등에 대해 상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노년플래너(시니어플래너, 웰다잉강사)
		숲이 가진 치유 기능을 활용하여 산림휴양 이용자가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각종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지도한다.	▶ 산림치유지도사
		기업의 작업환경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 문제를 파악해 근로자가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하며, 정도가 심한 부적응자는 정신과 의사나 임상심리상담사에게 연결한다.	▶ 산업카운슬러(감정노동상담사)

㉞공학관련 신 직업(4차 산업 혁명 등)	3D프린터를 조작·운영하여 고객의 요구에 따라 미니어처, 액세서리, 일상용품, 개인 편의제품, 기계부품, 시제품 등을 제작(출력)한다. 3D모델링이라고 부르는 설계과정을 비롯해 3D프린팅 과정, 출력된 제품의 후처리 과정을 거쳐 최종 제품을 만든다.	▶ 3D프린팅운영전문가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처리하고,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 빅데이터전문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전문장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장비 운용을 통해 데이터 산출, 해석 및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한다.	▶ 연구장비전문가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수행하거나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도하고 조언한다.	▶ 연구실안전전문가
	화학물질 등록 및 위해성 평가 대행, 유독물 위급시설의 관리 계획서 작성 및 관리,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업무를 한다.	▶ 화학물질안전관리사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에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적용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시설물을 구현한다.	▶ BIM전문가(디자이너)
	상업용 드론 시장이 광범위해짐에 따라 드론 표준 전문가, 드론 수리원, 드론 운항 관리자, 드론 조상사 등 드론 관련 신직업이 분류된다.	▶ 드론 전문가

전국 고용센터(문의처)

※ 각종서식은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서울	서울청	서울고용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4층 기업지원과(장교동, 장교빌딩)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	02-2004-7394~5, 7910~1
	서울청	서초고용센터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5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02-580-4972~5, 4956, 4922, 4978, 4977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10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02-3468-4703, 4708, 4709, 4711~4716, 4733, 4737, 4787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4층 기업지원팀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 송파구·강동구	02-2142-8420, 8429, 8433~5, 8443, 8456, 8896, 8404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5층(도화동, 삼창프라자)	서울특별시 용산구·마포구· 서대문구·은평구	02-2077-6001~6, 6025, 6030, 6034, 6065, 6095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20, 3층 기업지원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양천구· 강서구	02-2639-2403~24 04, 2411, 2413, 2415, 2330, 2333, 2162, 2435, 2499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50, 8층	서울특별시 중랑구·노원구· 강북구·도봉구·성북구	02-2171-1833, 1800~5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27, 대림포스트타워 3차 2층	서울특별시 관악구·구로구· 금천구·동작구	02-3282-9249, 9353, 9361, 9366, 9379, 9384~6, 9388~9, 9393~4, 9396~7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중 부 청	중부 청	인천고용복지*센 터	인천시 남동구 문화로 131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6층 기업지원과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남구· 연수구·남동구 및 옹진군	032-460-4811
	인천 북부 지청	인천북부고용복 지*센터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4층 기업지원팀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	032-540-5751 032-540-5742~5
	인천 북부 지청	인천서부고용복 지*센터	인천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서구청 제2청사) 10층 기업지원팀	인천광역시 서구 강화군	032-540-2050 032-540-2051~3
	부천 지청	부천고용복지*센 터	부천시 길주로 351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6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부천시	032-320-8972
	부천 지청	김포고용복지*센 터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김포시	031-999-0942
	고양 지청	고양고용복지*센 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교봉로 32-16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고양시·파주시	031-920-3962
	의정 부지 청	의정부고용복지* 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빌딩 1층 기업지원팀(가능2동 754)	경기도 의정부시·포천시· 구리시·남양주시·동두천시· 양주시·연천군·강원도 철원군	031-828-0832~4 0893, 0813, 0838
	경기 지청	수원고용복지*센 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수원고용센터 4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수원시·용인시·화성시	031-231-7897
	성남 지청	성남고용복지*센 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성남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성남시·광주시·양평군· 이천시·여주시·하남시	031-739-3170, 3122,4991,4916
	안양 지청	안양고용복지*센 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세포스빌타워 4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안양시·파천시·광명시· 의왕시·군포시	031-463-0761~4, 0767,0768
	안산 지청	안산고용복지*센 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안산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안산시·시흥시	031-412-6967
	평택 지청	평택고용복지*센 터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경기도 평택시·오산시·안성시	031-646-1238

청 (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지청	터	장당플라자2층 평택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강원 지청	춘천고용복지+센 터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9로 9(석사동), 넥스스프라자빌딩 3층 기업지원팀	강원도 춘천시·화천군·홍천군· 양구군·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033-250-1947
	강릉 지청	강릉고용복지+센 터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교동), 강릉고용센터 1층	강원도 강릉시·동해시	033-610-1913
	강릉 지청	속초고용복지+센 터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8, 3층(조양동) 속초고용센터	강원도 속초시·고성·양양군	033-630-1909
	원주 지청	원주고용복지+센 터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3층 기업지원팀	강원도 원주시·횡성군	033-769-0943, 0946, 0960
	태백 지청	태백고용복지+센 터	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	강원도 태백시	033-550-8633
	태백 지청	삼척고용복지+센 터	강원 삼척시 중앙로 214, 현진빌딩4층	강원도 삼척시	033-570-1906
	영월 출장 소	영월고용복지+센 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영월고용복지+센터(2층)	강원도 영월군·정선군·평창군	033-371-6254
부 산 청	부산 청	부산고용복지+센 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양정동) 부산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과	부산광역시 중구·동구·서구· 영도구·남구·부산진구·연제구·사 하구	051-860-1923~7, 1931,2072,2100
	부산 동부 지청	부산동부고용복 지+센터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4층 기업지원팀	부산광역시 동래구·금정구· 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	051-760-7210~5
	부산 북부 지청	부산북부고용복 지+센터	부산 북구 화명대로 9(화명동),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부산광역시 북구·사상구·강서구	051-330-9951~99 55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창원지청	창원고용복지*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고용센터빌딩 6층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창원시·합안군·의령군·창녕군	055-239-0960
	울산지청	울산고용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06 울산고용복지*센터 5층 기업지원팀	울산광역시	052-228-1942
	양산지청	김해고용복지*센터	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 김해고용복지*센터 4층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055-330-6437
	양산지청	양산고용복지*센터	경남 양산시 중부로 10 양산고용복지*센터 3층	경상남도 양산시	055-379-2430
	진주지청	진주고용복지*센터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973 2층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산청군, 하동군·남해군, 거창군, 함양군, 함천군	055-760-6751
	통영지청	통영고용복지*센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통영고용복지*센터 3층	경상남도 통영시·거제시·고성군	055-650-1811, 1814, 1818
대구청	대구청	대구고용복지*센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7층 기업지원과	대구광역시(중구·수성구·동구)·경산시·영천시·군위군·청도군	053-667-6036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9(내당동)	대구광역시 남구, 서구·달서구	053-605-6460~7, 6479
	대구서부지청	대구달성고용복지*센터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길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053-605-9518~9
	대구서부지청	칠곡고용복지*센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명성빌딩 4층	경상북도 칠곡군	054-970-1906~7
	포항지청	포항고용복지*센터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경상북도 포항시·영덕군·울릉군 및 울진군	054-280-3000
	포항지청	경주고용복지*센터	경주시 원화로 396 7층	경상북도 경주시	054-778-2500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구미지청	구미고용복지+센터	구미시 백산로118 구미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칠곡군 (석적읍 중리 국가 산업단지)	054-440-3361
	영주지청	영주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변영로 88 2층	경상북도 영주시·봉화군	054-639-1146
	영주지청	문경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1길 67 문경시산림조합건물 4층	경상북도 문경시·상주시	054-559-8251
	안동지청	안동고용복지+센터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경상북도 안동시·예천군· 의성군·청송군·영양군	054-851-8062
광주	광주청	광주고용복지+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 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	062-609-8500
	광주청	광주광산고용복지+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154(2층)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영광군·함평군	062-960-3201
	전주지청	전주고용복지+센터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전주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전라북도 전주시·무주군· 장수군·진안군·완주군·임실군	063-270-9210
	전주지청	남원고용복지+센터	남원시 향단로 39, 남원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남원시·순창군	063-630-3917
	전주지청	정읍고용복지+센터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근로자종합복지관1층 정읍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정읍시	063-530-7501
	익산지청	익산고용복지+센터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전라북도 익산시	063-840-6507
	익산지청	김제고용복지+센터	김제시 화동길 105	전라북도 김제시	063-540-8406
	군산지청	군산고용복지+센터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전라북도 군산시	063-450-0636
	군산	부안고용복지+센터	부안군 변영로 145, 2층	전라북도 부안군·고창군	063-580-0515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지청	터	부안고용복지+센터		
	여수지청	순천고용복지+센터	전남 순천시 충효로 147, 4층	전라남도 순천시·보성군·고흥군	061-720-9161
	여수지청	여수고용복지+센터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2층	전라남도 여수시	061-650-0140
	여수지청	광양고용복지+센터	전남 광양시 중마로 410, 8층	전라남도 광양시	061-798-1902
	목포지청	목포고용복지+센터	전남 목포시 평화로 5번지 4층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암군·진도군	061-280-0541~2, 0564
	목포지청	해남고용복지+센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 2층	전라남도 강진군·해남군·완도군·장흥군	061-530-2912
대전청	대전청	대전고용복지+센터	대전시 서구 문정로 56, 4층 기업지원과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금산군	042-480-6012~13, 6015~21
	대전청	공주고용복지+센터	충남 공주시 변영1로 46, 스타타워빌딩 4층	충청남도 공주시	041-851-8507
	대전청	논산고용복지+센터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4-8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	041-731-8601
	대전청	세종고용복지+센터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60번지 3층	세종특별자치시	044-861-8992~3
	청주지청	청주고용복지+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 청주고용복지+센터 1층 기업지원팀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괴산군·보은군·증평군·옥천군·영동군	043-230-6714~6716, 6719, 6721, 7006, 7008
	천안지청	천안고용복지+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3층	충청남도 천안시·당진시·아산시·예산군	041-620-7441~6
	충주지청	충주고용복지+센터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13(문화동, 충주고용센터) 2층 기업지원팀	충청북도 충주시·음성군	043-850-4030, 4032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충주지청	제천고용복지+센터	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화산동, 제천고용센터)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	043-640-9322
	보령지청	보령고용복지+센터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6, 보령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부여군·홍성군·청양군	041-930-6259 6243
	서산출장소	서산고용복지+센터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서산고용복지+센터 5층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041-661-5614
제주	제주고용센터	제주고용복지+센터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센터 2층	제주시·서귀포시	064-710-4462, 4470